#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52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 : 아수진비・강은미・김주영

문진석 • 우원식 • 김병주

김두관 · 최종윤 · 신동근

김경협 · 양정숙 · 주철혂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실 적용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이들의 취약한 교섭력과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 하여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125조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 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적용제외를 인 정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만 적용제 외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 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적용하 도록 함(안 제125조제6항).

법률 제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본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다음 보험연도부터"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혂 했 개 정 아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 한 특례) ① ~ ③ (생 략) 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 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 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 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 당하여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⑤ ----- 특수형태근로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 경우에는----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 ---. <단서 삭제> 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 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 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 l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

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용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